

1979~89年間 中國의 國家企業管理 및 所有權制度 改革에 관한 一考察

李 根*

<目 次>	
I.	序 論
II.	所有權 關係와 代理人 問題의 理論構造
III.	改革 初期段階의 二重的 談合問題
IV.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 改革에 있어서 CMI 모델의 發展
V.	中國式 社會主義 株式會社의 登場
VI.	結論과 展望

I. 序 論

1978년 말 이래로 과거 10년간 진행된 中國의 經濟改革은 이제 그 一過程을 마치고, 1989년 봄의 政治的 驟變 이후 심각한 軌道 修正 내지는 調整局面에 들어선 듯이 보인다. 개혁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각종 특권이나 권력남용 등과 관련된 經濟的 腐敗, 不公定한 經濟行爲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여, 이는 지난 봄의 학생시위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외국인 중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社會主義的 人間化」의 과정을 거친 순박한 人民의 상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개혁의 진행에 따라, 10억의 인구를 철저히 조직화하였던 垂直的 統制機構는 分權化政策에 따라 이완·해체된 반면에, 이에 대체할 만한 水平的 혹은 自動的 調節機構나 성숙된 市場機構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런 條件 하에서 진행된 경제행위에 대한 統制緩和는, 곧 資源分配體制의 교란과 왜곡으로 연결되었고, 여러 형태의 불공평한 경제적 競爭과 機會條件의 창출을 낳았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物理的 인센티브(material incentives)의 강조는,

* 하와이東西文化센터

經濟的 效率과는 괴리된 맹목적인 화폐적 이익추구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각종의 왜곡된 경제 행위와 부패가 全人民所有企業(혹은 국가기업)의 경제활동과 그 資產과 관련하여 발생할 때 이는, 理論的 觀點에서 비정상적 私的 이익을 추구하는 代理人(agents)에 의한 主人(principal)의 자산, 이 경우 國家資產 혹은 共有資產의 着服(혹은 侵蝕: expropriation)行爲라고 인식될 수 있다.

本稿는 中國의 國家企業體制 改革을, 所有權 經濟學(property rights economics), 또는 企業組織論(organizational theory of the firm)의 관점에서 소유권 관계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 이는, 社會主義企業의 각종 문제는, 형가리 경제학자 Kornai가 지적한 軟性豫算制約의 문제(soft budget constraint)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소유권 관계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²⁾ 本稿는 1989년 봄의 중국의 政治危機의 經濟的 배경의 설명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해에 일각의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本稿는 도시지역의 國家部門, 특히 전체 경제에서의 절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大中型 工業企業을 主分析對象으로 한다.³⁾ 중국은 이들 기업의 經濟的 效率성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1978년으로부터 계속 다양한企業體制 모델을 실험해 왔으며, 이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以下에서는, 우선 社會主義 企業體制 개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자.

II. 所有權 關係와 代理人 問題의 理論構造

社會主義經濟 下에서, 國家 혹은 共有資產의 私的 차별 혹은 침식에의 경향에는, 그 物的 기초와 人的 기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그 物的 기초란 社會主義 下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財產形態(forms of property)가 존재하며, 이 여러 형태의 재산들에 대한, 개인의 측면에서 본 所有權 弱化(attenuation)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所有權은 所得權(income rights)과 統制權(control rights)으로 나눌 수

1) 所有權 經濟學이나 企業組織論의 문헌은 Fama and Jensen(1983), Tirole(1986), 그리고 Williamson(1988, 1989)를 참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소련의 계획경제를 분석한 논문은 Moore(1981)이 있다.

2) Kornai(1986)의 軟性豫算制約이란, 社會主義 하의 국가기업은 쉽게 국가의 보조금이나 감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採算性이나 효율에 둔감한 상황, 즉 기업이 예산의 收支均衡을 그다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

3) 1985년에 大中型企業은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에서 1985년에 걸쳐 費用當 利潤, 資本當 利潤이 각각 15.1% 그리고 10.1%씩 감소하였다. 기타 더 자세한 관련 수치는 PRC, State Council(1988)을 참고.

있으며,⁴⁾ 이들 권리에 대한 각종의 制限에 따른 그 약화(attenuation)는 소유자 입장에서 본 그 재산에 대한 使用價值와 交換價值에 영향을 미친다[Furabton and Pejovich(1972, p. 1140)]. 가령 社會主義共有制에서는, 국가예산이나 노동자 개인 임금이나 모두 명목적으로는 노동자의 소유이나, 예산에 대한 개별 노동자의 통제권은 거의 영에 가까운 반면, 임금이나 보너스는 生產手段의 공유에 기초한 개별 노동자의 소득권의 일부지만 거의 완전한 사유재산에 가깝다.

한편, 공유재산 침식의 人的條件은, 국가관료, 공장장, 일반 노동자들이 항상 社會主義 건설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갖춘 「闊士」나 作仕者(stewards)가 아니라 전체 이익에 대한 봉사와 개별 이익의 적당한 결합을 기회주의적으로 추구하는 代理人(agent)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에 대한 다양하고 고도의 통제를 그 존재기반으로 하고 있는 資本主義 下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企業에서도 企業內 의사결정권(통제권)의 적절한 配分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機會主義的 代理人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decision management) 즉, 計劃을 入案하고(initiate) 집행(implementation)하는 기능과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機能(decision control) 즉, 감독하고(monitor) 승인(recification)하는 기능의 分離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Fama and Jensen (1983)].

위에 설명한 人的條件과 物的條件의 統一 또는一致는 국가재산 침식의 경향을 현실화시킨다. 즉, 다양한 형태의 재산(物的 조건)에 접한 機會主義的 代理人(人的 조건)은 公有財產을 個人재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을 위해 轉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순이 중국의 경제개혁 진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諸問題의 根底에 놓여 있다.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국가기업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층차의 인센티브 지급(incentive pay-off)이 도입되었다. 첫째, 개혁 이전에는, 기업이 실현한 이윤의 전부를 국가가 수취하여 갔으나, 이제는 기업의 自發的 動機附與를 위해, 일정 부분의 이윤을 企業內에 유보하도록 허용하였다. 둘째로, 이 유보이윤은 蕪積基金, 집체복지기금, 그리고 보너스기금으로 쓰여지게 되었다.⁵⁾ 이하에서는 다음 세 가지 자금의 흐름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國家에 납부되는

4) Pryor(1973)에 따르면, 所得權이란 노동에 의하지 않고도 재산을 사용해서 일정의 所得이나 效用을 획득할 수 있는 權限을 말한다. 統制權이란 간혹 의사결정권이라고도 불리며, 재산을 生產이나 交換 등 기타 행위에 「使用」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지칭한다.

5) 초기에 중국에서는 소련식 모델을 따라 도입되었다. 보너스제도는 文化革命 中에 노동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잔재라고 폐지되었다. 보너스체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Walder (1987)를 참조하시오.

利潤，둘째，社內에 유보되는 利潤(혹은 기업기금)，셋째，보너스지급분이다.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종류의 자금에 대한 그의 所有權의 약화 정도는 國庫歸屬利潤이 가장 심하고 企業基金, 그리고 보너스의 순이다. 고로 여기에서는 우선 가능한 한 國庫歸屬分을 줄여서 企業留保分을 늘리고, 다음으로는 企業留保分 중 가능한 한 많은 액을 보너스로 지급받기를 원한다. 이런 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건 중의 하나는, 기업 總利潤의 國庫歸屬分, 企業留保, 그리고 세 가지 기금으로의 구분이 어떤 客觀的 經濟法則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과 이를 감독하는 국가기관 사이의 임의적 交涉(bargaining)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교섭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교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기업이윤의 충차적 分配에 있어서의 任意性과, 각각의 분배분에 대한 개별 노동자의 소유권의 단계적 차이는, 共有性이 강한 부분의 뜻을 私有性이 강한 부분에 비해 줄이는 경향을 발생케 한다. <表 1>은 이러한 경향의 현실화를 보여준다.

<表 1>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중국의 國民總生產은 연평균 9.6%(불변가격계산)씩 증가하였지만, 國家企業으로부터 국고에 귀속된 이윤은 개혁 전반 6개년 간에 오히려 감소하였고, 후반에는 겨우 제자리에 머물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10년간 재정수지는 평균적으로 적자에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너스와 초과성과급임금으로 받은 노동자들은 期間 중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期間 중 연평균 1人當 國民所得增加率(8.2%)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社內留保利潤의 增加率은 국가귀속이윤의 증가율과 보너스 및 超過成果給 임금의 증간에 온다. 이렇게 많은 양의 자금이 기업에 유보되고, 이것이 노동의 유효 고취를 위한 보너스지급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업의 經濟的 效率性은, 總利潤率(利潤/資本)이나 단위 자본당 총생산액의 비율(불변가격 계산)등으로 측정할 때, 거의 향상되지 않았음을 <表 1>은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Tirole 教授가 제시한 「位階的主人—代理人 모델」(hierarchical principal-agent model)을 원용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⁶⁾ 중국도 다른 社會主義諸國과 마찬가지로, 垂直的이고 位階的인 경제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다음의 다섯 행위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 黨・國家의 中央指導部, ii) 中間 내지 下級 國家機關, iii) 地方 혹은 企業의 黨支部, iv) 공장책임자, 그리고 v) 일반노동자. 위의 다섯 행위자 중에서, 中央指導部도 근본적으로는 社會主義 하에서의 진정한 「殘餘

6) 보통의 主人—代理人 모델에 의해 Tirole(1986)의 位階的 모델은 주인—감독인—대리인의 3개 층차를 가지고 있다.

〈表 1〉 中國에 있어서 經濟改革과 資金循環 그리고 經濟的 效率 (單位: 10億元, 元)

	1978	1980	1984	1985	1988	年平均增加率(%)		
						'78~'84	'84~'88	'78~'88
(A)								
G N P	358.8	447	696.2	856.8	1,385.3	11.7	17.4	14.5
G N P(1978價格)	358.8	416.6	597.8	673.8	900.6	8.9	10.2	9.6
G N P 디플레이터	100	107.3	116.5	127.2	153.8	2.6	6.6	4.4
(B)								
財政收支	1.01	-12.75	-4.45	2.16	8.05	-7.35	-1.2	-4.8
利潤收取 혹은 所得稅	57.20	43.52	27.68	55.76	58.25	-11.4	1.5	0.2
豫算外 企業基金	25.26	42.21	99.07	25.27	162.6	25.6	13.7	22.9
보너스 또는 超過成果 給	1.13	6.09	14.39	15.47	35.30	52.8	31.7	41.1
(C)								
資本當 總利潤	0.242	0.248	0.242	0.238	0.206	0.0	-4.7	-1.6
固定資產當 總利潤	0.248	0.243	0.223	0.224	0.202	-1.8	-3.4	-2.0
固定資產當 總產出	1.03	1.01	0.96	0.95	1.131	-1.2	6.0	0.9

資料:『中國統計年鑑』혹은『中國統計摘要』

註: 1) 1985년 所得稅制度의 채택으로, 상남되는 國家企業 이윤은 소득세로 개칭되었음.

2)豫算外 企業資金은 국가기업이나 그 監督國家機關이 중앙에 상남하지 않고 유보한 자금을 칭함. 1988년 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1987년 수치로 대신하였음. 고로 마지막 두 행의 年平均增加率은 각각 1985~87년 그리고 1978~87년期間中의 수치임.

3) 보너스나 超過成果給 수치는 국가기업에 관한 것임.

4) 資本 혹은 總資產은 固定資產 純價值와 流動資產 年平均值의 합임. 고정자산당 종이윤과 고정자산당 종산출에서 고정자산은 원래가치에서 평가된 것이고, 종산출은 불변가격에서 계산되었음. 이 수치들도 국가기업에 관한 것임.

5) 財政收支列의 마지막 3行은 年平均成長率이 아니라, 期間中 재정수지의 평균을 칭함. 각각 1979~84년, 1985~88년, 그리고 1979~88년 기간 중의 평균재정수지임.

受取者」(residual claimant)인 現代 사회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봐야 하지만, 現代 사회를 리드해 가는 政治的 危險(risk)을 自發的으로 감수한다는 의미에서 「主人」(principal)으로 상정될 수 있다. 여기서, 찬여수취자의 理論的 正義는 諸代理人들에게 事前에 정해진 일정액의 貨幣的 보상을 지급한 후에 남는 純所得에 대한 권리(claim)를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殘餘危險」(residual risk)을 감수하는 자를 뜻한다[Fama and Jensen (1983)]. 中央指導部를 제외한 나머지 네 행위자는 중간감독이나 대리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찬여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最終的 주인인 現代사회나 이를 대표하여 정치적 위험을 지닌 中央指導部의 이익이나 지시에 어긋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적절히 감독되고, 바람직한 行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構造 속에 놓여져야 한다. 그런데 Tirole

이 지적하듯이, 주인과 대리인의 兩 층차로만 구성된 단순모델에서와는 달리, 여러 다른 층차에 속한 대리인들을 포함한 位階的 主人—代理人 모델에서는 다른 層差에 속한 대리인들 간에 談合(collusion)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 上層部에서는 기업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國家機關과 企業 간에 담합이 일어났고, 下層部에서는 국가기업의 공장장과 노동자들 간에 담합이 일어났다. 上層部談合은 국가와 기업 간의 利潤配分에 있어서 中央政府의 몫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고, 下層部談合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기업유보이윤을 둘러싼 配分의 문제에서 노동자몫을 규정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III. 改革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二重的 談合問題

1. 上層部 談合

중국에 있어서 國家企業 管理體系의 개혁은 국가기업에 대한 과도한 中央執權的 統制를 완화하고 기업의 自發性을 장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업은 생산과 販賣에 있어서 보다 많은 自律權이 주어지고, 유보이윤을 기초로 獨立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여기서의 역할분담의 구조는,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總體的 의미로서의 국가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이윤을 수취하는 「所得權」을 가지고, 下級國家機關이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意思決定 管理權」에 대해 「意思決定 統制權」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분담 구조는 기대된 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效率性은 향상되지 못한 반면에, 국가의 기업으로부터의 利潤收取는 격감하였다. 그 주된 原因은, 기업에 대해 국가의 소득권을 집행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下級 國家機關과 企業 간의 談合의 발생이다. 즉, 하급국가기관은 기업에 대해 자율성을 부과하려는 중앙지도부의 개혁정책에 非協助의되었으며, 기업에 대한 그들의 통제를 온존시키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비정상적인 가부장적 보호를 제공하였다.

기업에 대한 家父長의 保護는, 각종 軟性 補助金, 軟性 租稅執行 등의 형태를 통하여 企業豫算制約 軟性化(softening of the budget constraint)를 낳았다. 예를 들면, 企業利潤 留保制度의 집행에 있어서, 기업의 실현이윤이 정해진 이윤쿼터에 미달했을 때에 監督國家機關은 종종 「寬容」을 베풀었으며, 實現利潤이 이윤쿼터에 비해 기대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각종의 임의적 명목의 사회부조금 등의 準租稅로 이를 수취해 갔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기업의 이윤성 향상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원래의 利潤留保制度의 취지는 발휘되기 힘들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80년

대 초반까지의 이윤유보 혹은 利潤契約制의 실시 결과, 국가재정수입의 격감에 따른 심각한 財政赤字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3년에 중앙정부는 「所得稅制度」를 도입하였다.⁷⁾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해 地方國家機關들의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고 동시에 기업부담의 증가를 의미하여,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갈에 따라 1986년 이후 다시 그 전의 利潤契約制로 되돌아 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상의 상황 전개를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下級 혹은 地方國家機關이 기업에 대한 그들의 「任意的 支配」(discretionary governance)를 온전하려는 데 있다. 윌리암 教授에 따르면 임의적 지배는 「規範을 통한 支配」(rules governance)에 비해, 신축성이 강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취약한 점이 있다. 중국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고취가 급선무였던 반면에, 기업에 대한 자의적 통제는 非生產的인 간섭으로 귀결되었다.

2. 下層部 談合

1978년 이래의 국가기업 내부의 領導體制(leadership system)의 개혁에 있어서는, 「黨委員會 指導 하의 工場長責任制」가 부활되었다.⁸⁾ 企業內部分業 논리에 의하여, 공장장은 시장의 요구에, 그리고 당시기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나 黨委에 의한 集團指導體制는 잘 작동하지 못하고 실질상 당시기 1人에 의한 獨裁로 대체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職工大會」(Worker's congress)도 1978년에 부활되었다. 부활된 職工大會의 권한은 확대되었는 바, 그것은 생산계획과 예산의 承認・監督權, 그리고 공장장을 포함한 고급 간부의 選出과 換을 포함하였다.⁹⁾ 職工大會에 의한 공장장의 선거는 監督國家機關의 事前調整을 거치거나, 대부분의 국가기업의 경우 선거를 거치지 않고 監督國家機關이 직접 공장장을 임명하였다[Hong and Lansbury (1987)].

이상과 같은 企業內部 리더쉽體制는, 공장장이라는 한 대리인과 다수의 감독자 즉 黨委와 黨書記, 監督國家機關, 그리고 職工大會로 구성된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공장장은 다중의 감독자로부터의 다양하고 때로는 상치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진 반면에, 개혁 이래 공장장의 권한은 의무에 비해 거의 증대되지 않았다.

7) 소득세제도의 실시로 기업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55%의 이윤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독기관과 나누어 가졌다. Bachman(1987) 참조.

8) 1950년대 초기에 소련식 모델을 따라 도입된 「공장장 중심제」 이후 중국기업 영도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Chamberlain(1987)을 참조하시오.

9) 직공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Morris(1985)를 참조하시오.

다. 이런 조건 하에서 一般勞動者層으로부터의 支持는 공장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매우 중요하였으며, 공장장은 노동자층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층과의 담합을 도모하였다.

Walder 教授가 지적하듯이, 공장장과 노동자 간에 默視的 동의가 集體福祉基金과 보너스基金으로 가능한 많은 액의 社內留保利潤을 돌리고, 이를 가능한 한 똑같이 나누는 데에 협력하였다[Walder (1987)]. Walder 教授의 관찰에 의하면, 전반적 賃金所得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과 作業成果測定의 모호성으로 임금과 보너스 지급에 관련한 노동자들의 알력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장장은 보너스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또 노동자들의 사원주택건설 등의 용도에 대한 집체복지기금 사용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의 대가로 공장장은 노동자로부터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협조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공장장과 직공의 담합의 배경에는 社會主義的 平均主義(socialist egalitarianism)의 전통이 깔려 있고, 이 경향은 「勞動에 따른 分配」의 술로건에 따른 새 노동보상체계의 정착을 저해하였다.¹⁰⁾

IV.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 改革에 있어서 CMI 모델의 發展

1. 組織

초기의 기업체제 개혁의 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업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새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契約經營責任制(cheng bao jingying zerenzhi: contracted management system, 이하 CMS), 둘째, 工場長責任制(changzhang fuvezhi: manager responsibility system, 이하 MRS), 셋째, 内部契約制(neibu cheng bao zhi: internal contract system, 이하 ICS), 이상의 세 개혁조치는 「企業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등으로 공인되었으며,¹¹⁾ 大中型 國家企業에 광범하게 실시되었다.¹²⁾ 위의 세 구성 요소의 영문 첫 글자를 따라서 이 새 모델을 CMI 모델이라고 명명하자. CMI 모델은 앞 절에서 논의한 二重的 談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契約經營責任制는 국가와 기업 간의 책임, 권리, 의무들의 관계를 좀 더 규범화함으

10) 사회주의적 균등주의와 공장장과 노동자 간의 담합이 실제로 국가와 기업 간의 이윤 분할과 노동자 보너스 지급행태에 미친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는 Lee and Mark (1989)가 있다.

11) 중국의 기업법과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An(1988)과 PRC, State Council(1988)을 참조하시오.

12) 국가기업에 있어서 CMI 모델의 채택, 실시의 정도는 Wang(1988) 그리고 PRC, Economic Committee (1987, p.14)를 보면 알 수 있다.

로써 상충부 담합을 저지하려는 것이고, 内部契約制는 기업 내의 작업조직과 보상체계를 긴밀하게 연결시킴으로써 下層部 談合에 의한 균등 보너스지급 등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工場長責任制로 권한이 강화된 공장은 이二重的 談合을 저지하려는 중앙지도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적 대리인으로 선택되었다. 우선 위의 세 요소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추가해 보자.

1) 契約經營責任制

契約經營責任制에 의하면, 국가기업은 경영에 관련된 감독국가기관과 기업 양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3~5년 有效期間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제는, 기업의 생산수단에 대한 國家所有를 견지하되 그 경영권 내지 사용권을 기업에게委任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식 所有와 經營의 분리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계약의 가장 주된 내용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이윤쿼타에 관한 사항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는 초기에 실시되었던 利潤契約制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利潤契約 외에 새로이 추가된 두 요소 중 첫째는 技術革新投資에의 의무이고 또 하나는 총입금 증가와 이윤성 증가를 상호 결부시키는 조항이다.¹³⁾ 또한 契約經營責任制는 공장장의 보너스를 계약의 완수와 연결시키며, 계약의 준수를 감독국가기관의 自意的 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3자라 할 수 있는 公證人の 공증을 받도록 하고, 분쟁의 발생시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다. 그 결과 이 제도가 감독국가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PRC, ESRRT(1988)]. 또한 기업은 國家所有基金과 企業所有基金의 회계를 분리 작성토록 요구되었으며, 이 축적된 기업기금은 기업이 이윤납부 등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위험기금」 또는 저당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2) 工場長責任制

개혁에 따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당에 의한 기업경영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1984년 이래 「工場長責任制」가 새로운 기업영도체제로 등장하였다[PRC, Economic Committee (1987)]. 계약경영책임제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工場長責任制는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공장장책임제 하에서, 당위원회는 더 이상 最高意思決定機構가 아니며, 그 업무는 기업내 黨組織과 정치공작에 국한되었다[PRC, Economic Committee (1987)]. 이제, 공장장은 기업의 생산, 판매, 투자, 임금정책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통일된 권한을 행사하고, 外部에 대해 기업을 대표하고 또한 책임을 지도록 되었다. 기업의 중요문제를 심의하고 공장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工場委員會」에서도 공장장의 의견이

13) 이렇게 확대·개선된 이윤계약제는 Siangbao Yigua로 불려진다. Wang(1987) 참조.

우선권을 가지도록 되었다.

3) 内部契約制

内部契約制는 초기의 平均主義的 보너스지급을 지양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수립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는 기업 내부에 여러 層次에 걸친, 마치 下請과 같은 諸契約關係의 구조를 형성한다.¹⁴⁾ 이는 契約經營責任制에 의한 국가와 기업 간의 本契約과 연결되어, 기업을 수직적으로 총괄하는 位階的 契約構造를 형성한다. 즉, 최상층부에는 국가와 기업 간의 계약이 있고, 다음 층차에는 공장장과 각 부문장들과의 계약, 그리고 제 3 층차에서는 각 부문장들이 부문계약을 몇 개 作業組에 할당하며, 마지막으로組長이 이를 개개인에게 할당한다.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内部契約制는 합리적 경제계산과 부문간의 상호책임성을 중요시한다. 즉, 각 부문은 그 부문의 투입과 산출의 성격에 따라 「閉鎖單位」와 「開方單位」 등으로 분류되며, 「内部價格體制」(internal price system)에 의해 각 부문의 이윤 등 경제적 효율성을 계산토록 되어 있다. 이에 추가로, 기업의 경리부 안에 「内部銀行」(internal bank)을 설치하여, 간부는 자기 구좌를 열어 독립적 회계를 유지하도록 권장되었다.

内部契約制의 주된 목표는 고급 간부와 각 부문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는 데 있다. 부문장들은 「個別契約者」(individual contractor), 그리고 각 부문은 「集體契約者」로 분류된 후, 개별계약자의 보너스는 국가와 기업 간의 契約의 완수와 연결되어 있고, 集體契約의 경우에는 할당된 사업의 완수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된다. 내부キュータ는 그 완수에 거의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해지며, 주로 超過完遂에 대한 보상으로써 성취동기를 고취하는 방식이다.

2. CMI 모델에 있어서 二重談合의 問題

1) 監督國家機關과 企業 間의 談合 問題

契約經營責任制의 실시와 계획경제의 범위 축소는, 기업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통제의 自意性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기업의 공장장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아직도 그 任命과 罷免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의 고급간부를 임명하는 데도 감독기관의 同意가 필요하다. 즉, 공장장은 工場長責任制의 실시와 더불어 黨委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었을련지는 모르나 아직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責任者의 입장에서 볼 때, 감독기관에 대

14) 내부계약제에 관한 문헌으로는 주로 He(1987), Gao(1988)과 PRC, ESRRT(1988)을 참고하였다.

한 계속적 順從의 대가로 보호를 계속 향유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국가법령을 보면, 기업측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반면에, 國家機關 측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모호성은 계약제 실시 이후, 오히려 감독국가기관의 간섭이 증가했다는 불평의 사례를 낳기도 하였다[Shanghai Wenhuibao(1988. 8. 10)].

보다 根本的으로는 契約制의 몇 가지 결함이 담합문제의 物的基礎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는 개별 기업의 계약의 체결이 기본적으로 감독국가기관과 해당 기업 간의 임의적인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에 연유한다. 첫째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윤퀴타의 수준을 정할 것인가는 利潤契約制 실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둘째로, 계약의 집행에 있어서의 「軟性執行」(soft enforcement)의 문제도 남아 있다.¹⁵⁾ 이 두 가지 이유로 계약경영책임제가 그 이전의 소득세제도에 비해 기업의 예산제약을 更化(hardening)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곧 利潤契約執行의 非對稱性과 연관되어 있다. 이윤이 정해진 이윤퀴타를 넉넉히 초과 달성하였을 때에는 이윤의 납부가 잘 이행되나, 손실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다. 손실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 抵當基金인데, 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손실을 補充할 기금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요약하자면, 監督國家機關의 기업이나 공장장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는 반면에, 監督國家機關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나 통제의 문제에 대해 CMI 모델은 전혀 언급이 없다. 契約經營責任制는 국가기관과 기업 간의 관계를 다를 뿐, 중앙지도부와 지방 하급국가기관 간의 관계는 그 범위 밖이다. 고로 국가의 기업에 대한 정당한 소득권의 행사가 정확히 행사되지 못하고, 국가자산이 하급국가기관과 기업 간의 담합에 의해 침식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하겠다.

2) 工場長과 勞動者 間의 談合問題

內部契約制의 약점은 그 집행이 결국 기업 내부의 문제이므로, 공장장과 기업간부들이 진실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일반 직공에 대해 적절한 獨立性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軟性執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장장의 권한은 아직 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15) 이에 대해서는 Shanghai Wenhuibao(1988. 8. 10)과 Jingji Ribao(1988. 3. 13)에 사례가 나와 있다.

공장장에게 아직 개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노동자들의 복지나 징계에 관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職工大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n(1988)]. 최근 실험되고 있는 契約勞動制는 노동자를 3~5년간 계약에 따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노동자들의 반발로 이는 오직 신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거의 평생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White(1987); Korzec(1988)].

Tirole 교수에 의하면 개인이나 집단 간의 협력은 그들의 상호 접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능성성이 증대되고, 과거의 談合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談合을 조장한다고 한다[Tirole(1986), pp. 201-2]. 그렇다면 중국에서 工場長과 一般勞動者의 고용의 거의 영구성과 직종집단에 의한 工場長評價制를 고려할 때, 공장장과 노동자 간의 담합이 CMI 모델 하에서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공장장이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일정 집단의 노동자를 다른 집단에 비해 우대해 주는 「差別的位階的同盟」(discriminatory hierarchical coalition)을 형성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의 가능성과 유효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어쨌든 공장장과 노동자 간의 담합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공장장의 獨立的 권한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工場長責任制에 의한 黨委로부터의 독립조차 불확실한 현실이다. 이는 당의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전적으로 黨委나 黨書記의 협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工場長責任制에 관한 국가규정에 보면, 당위의 권한에 대해 「企業의 運營을 보장하고 감독」한다는 모호한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工場長責任制의 실시에 있어 지금까지는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모두 보고되어 있으나,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¹⁶⁾ 최근 1989년도 봄의 정치적 격변 이후, 당의 권한이 재차 강조되고 있어, 工場長責任制의 실효성을 더욱 불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V. 中國式 社會主義的 株式會社의 登場

1. 登場의 背景 : 企業所有權制度 改革 論爭

1980년대 중반까지의 중국의 國家企業體制 개혁의 부진한 성과는, 80년대 말에 기업체체 개혁의 전략에 관한 논쟁을 낳았다[PRC, Conference(1988); Wu(1987)]. 이 논쟁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논쟁의 촛점이었던 국가와 기업 간의 分配關係에 관해, 첫째 시각은 기존의 契約經營責任制를 수정·보완

16) 각종의 사례에 관해서는 Sha(1988)과 PRC, Economic Committee(1987)을 참조.

해 나가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所有權制度부터 손을 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의 논리는, 국가와 기업 간의, 법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소유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자 간의 통제권과 분배권의 불명확한 정의와 집행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契約經營責任制 하에서는 비효율적인 손실 기업들이 도태하고 새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自動的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고, 기업의 행위가 계약기간을 고려한 短期指向의 되어 動的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한다.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를 微視的 直接統制에서 巨視的 間接統制로 바꾸려는 장기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도 契約經營責任制는 국가기구의 개별기업의 경영에 대한 적절 참여를 온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위와 같은 주장들이 80년말에 株式會社制度의 실험을 확대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자본주의의 초기에 株式會社制度가 주로 분산된 소자본을 대자본으로 집적하기 위해 등장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1988년 말까지의 추계에 의하면, 중국에 6,000개 이상의 주식회사가 있다고 한다[He(1989)]. 대부분은 集體企業에서 전환된 것이고, 최근 국가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실험이 확대되고 있다. 社會主義 하에서 주식회사제도의 실험은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生產手段(기업)에 대한 국가의 獨占의 소유를 완화하여 개인에게도 소유권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는 政治的으로도 민감한 이슈다. 왜냐하면, 이는 곧 社會主義 하의 분배는 자본(재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노동에 따라 이뤄진다는 마르크스의 고전적 주장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⁷⁾

아래에서는 여러 사례의 中國式 株式會社,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쥐공쉬주철公社(이하 ZZC)와 자링工業公社(이하 JIC)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中國式 社會主義 株式會社制度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¹⁸⁾ 이는 이를 기업이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전형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中國式 株式會社制度에 있어서 所得權의 構造

中國式 株式會社의 주식은 국가소유분, 기업소유분, 그리고 개인소유분으로 나눠진다. ZZC회사의 경우 1987년의 주식소유의 분포는 국가소유분이 66.68%, 기업소유분이 31.43%, 개인소유분이 1.89%이 있다. 주식은 소유주의 이름과 소속이 적히

17) Marx(1891) 참조. 자본에 따른 분배를 경당화하는 한 주장은 자본을 죽은 노동으로 보아 이도 결국 노동에 따른 분배라고 보는 것이다.

18) 이하의 이 두 기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JIC(1988)과 Mou(1988)을 참조.

며 退藏을 통하여 換錢될 수 없다. 國家 소유분은 國家資產管理局(임시로는 재무부)이 관리하며, 국가기관 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個人所有株式은 내부적으로 회사 구성원에게 발행된다. ZZC의 경우 각각 100元씩 하는 株를 25만元어치를 회사원들에게 25% 할인으로 판매하였다. 각 회사원은 자발적으로 최대 10株까지 살 수 있었다. JIC의 경우는 모든 회사구성원이 10株씩을 사도록 강요되었다. 個人所有株는 해당 기업 내부에서만 거래, 저당, 상속될 수 있다. 국소수의 주식회사가 회사 외부 일반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¹⁹⁾

이윤의 분배에 있어 기업은 우선 국가에 所得稅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蕪積基金, 集體福祉基金, 危險基金으로 나눈 다음, 최종 나머지를 배당으로 분배한다. 소득 세율은 3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He(1989)].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企業基金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주주들 간에 相對的 持分의 비율에 따라 부담되었다. 國家所有株와 企業所有株는 소유주식 가치의 6%에 해당하는 固定配當이 주어진다. 企業持分에 대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촉적기금으로 귀속되어 재투자되도록 되어 있다. 개인주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이 함께 지급되는 바, 그 합이 株式價值의 18%를 넘지 못하도록 되었다. 배당 후에 남는 이윤은 재투자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각 주주 간의 지분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위의 논의로부터 國家配當分은 고정부분과 유동부분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고정부분은 持分에 대한 6%의 수익분이고, 유동부분은 고정배당 이상의 流動的인 超過配當이다. 이 유동부분만이 불확실한 殘餘利潤이란 점에서 「殘餘收取權」(residual claim)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업에 재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遊離性(alienable) 殘餘收取者」라고 할 수 없다. 기업지분에 대한 배당은 항상 재투자되므로 기업 또한 遊離性 殘餘收取者가 아니다. 개인소유분에 대한 배당도 고정부분과 유동부분으로 나뉜다. 고정부분은 주식 가치의 10%만큼의 利子所得이다. 이 점에서 주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부분만이 순수 배당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수익률에는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인주주는 制限的 遊離性 殘餘收取者(constrained alienable residual claimant)로 파악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나 기업 모두 그 불확실한 유동배당 소득부분을 재투자하므로 遊離性 殘餘收取者가 아니고 개인주주만이 유리성 잔여수취권을 가지고 있다. 고로 개인 주주는 이 遊離性 配當所得 부분을 가능한 한 늘리려는 동기가 있는 반면에,

19) 공매의 경우는 Ellman(1988)과 He(1989)에 나와 있다.

국가는 이 부분을, 개인의 投資意欲을 심각히 손상시키기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통제하려는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국가의 이 避離性 配當에 대한 통제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15% 내지 18% 上限이라는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20% 심지어는 40%까지 個人持分의 配當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Wu and Cheng(1989)]. 이런 현상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면, 곧 私的 利潤動機를 가진 개인에 의한 國家資產侵蝕이다. 다시 말하면 遊離性 殘餘受取者와 非遊離性 殘餘受取者の 공존은, 중국식 사회주의 주식회사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個人所有持分에게 상한을 넘는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은, 중국식 주식회사제도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이 자본주의의 그것과 다른 데서 연유한다. 현대자본주의에서 株式投資는 제도화된 자본시장이 밀반침이 되어 개인으로 하여금 투자와 관련된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험분산은 주식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기업 외부로의 株式去來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고,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資本市場의 미발달로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투자자가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정도가 높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주식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고 한다[He(1989)]. 이러한 構造的 脆弱性에 대한 보상이 규정 이상의 配當金支拂과 고정 수익률이 보장된 利子支給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代理人 問題

中國式 株式會社는 주주총회, 이사회, 국가자산관리국들의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장장이나 일반노동자 측의 「代理人 問題」를 제어하려고 한다. 즉 株主總會(혹은 資產管理委員會)가 소유권을 대표한다면 理事會는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工場長은 의사결정을 관리·집행하는 分業體系이다. 경영진은 이사회가 임명하되, 적 공대회의 추천을 거치기도 한다. 위 방식의 역할분담은 자본주의 하의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그 效果性에 대해선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간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주식회사에서는 국가지분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리인의 侵蝕行爲로부터 보호하는 데 충심을 바치는 自然人 株主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國家株를 대표하는 이들은, 實際 주주가 아니라, 국가는 抽象的 株主의 代理人일 뿐이다. 이 대리인들의 수입은 기업의 成就度와 그다지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그들의 활동에 상관없이 적어도 國家持分에 대한 고정배당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代理人들이 국가자산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기업이 주식회

사로 전환될 때에 국가자산이 고의로 低評價되거나, 심지어는 이사회에서 國家持分의 대표자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까지 보고되고 있다[Zhao(1989)]. 國家資產管理局의 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중립적이라 할 만한 학자, 은행가 등의 전문가가 적고, 관료들만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VI. 結論과 展望

개혁 이래로 중국의 기업체는 傳統的 國家企業體制에서 출발하여 초기의 개혁 실험을 거쳐 CMI 모델로 이행하였고, 최근에는 株式會社制度까지 실험되었다. 본고는 이런 進化過程의 배경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CMI 모델의 초기 모델에 대한 優位性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1989)]. 한편 株式會社制度 실험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²⁰⁾

1989년의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식회사제도의 실험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Rosario(1989)], 政治的 保守主義가 특세할수록 典型的 자본주의제도인 주식회사 실험은 더 이상 확대될 것 같지 않다. 당분간은 契約經營責任制가 지배적 기업모델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契約經營責任制나 주식회사제도의 經濟的 成果側面의 우열은 가리기 힘든 반면에, 契約經營責任制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경험의 축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도 적다. 契約經營責任制의 앞으로의 개선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이윤상납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세와 분리된 이윤상납은 결국 주식회사의 배당금과 같은 성격이 된다. 契約經營責任制의 문제점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인 반면에, 주식회사제도 하에서는 國家持分의 암도적 다수성이 주식과 자본의 이동성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고로 어떤 제도를 채택하건 간에 國家資產管理局의 資源配分機能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의 中國의 產業政策의 중점은, 국가자산의 보호와 이의 침식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私企業이나 농촌지역의 集體企業은, 地方國家機關들의 보호 아래 국가 주요 기업들에게 가야 할 부족한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부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Delfs(1989)].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기업의 自主性과 創意性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자산의 침식행위를 규제할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0) 예를 들면 Wu and Cheng(1989)와 Rosario(1989)를 보시오.

의 물가상승과 부정부패의 만연은 중국노동자의 勞動意慾을 저하시킨 반면에 최근 불균등한 보너스지급에 항의하는 노동자시위에 대한 보도에 나타나듯이 分配的 平均主義는 아직도 영향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¹⁾ 즉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관련하여 精神的 인센티브나 物質的 인센티브, 모두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앞으로의 中國經濟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社會主義 하에서 私的 利潤動機에 의한 공유재산의 침식과정을 분석하였지만, 그 반대로 자본주의의 역사는 公共福利 추구동기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식 내지 제한의 과정이다. 이런 경향은 긍정적으로 또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지, 資本主義 하에서 철저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社會主義 하에서 철저한 獨占의 國家所有制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사유재산에 기초한 경제에 公益을 대표한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되었다고 본다면, 사회주의의 위기는 共有制나 國家所有制를 완화하여, 非正常的 방법으로 共有資產을 침식하는 사적 이윤동기를 非國家部分의 인정으로 양성화하여 그 치유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인의식에 충만하여 문화혁명 당시 보너스제도를 자본주의의 친해라고 스스로 폐기하였던 중국노동자들이 이제 그 혁명적 열기를 잊은 채 機會主義的代理人으로 轉化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既得權에 기초한 방만한 요구를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인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반대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대리인의식을 극복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들의 뜻과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이, 長期的 次元에서 인센티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An, Jian, et al., *Zhongguo Renmin Gongheguo Quanmin Sosouzhi Gongye Qiyefu Yiyi (Explanation of PRC's State Industrial Enterprise Law)*, Beijing: Gongshang Chubanshi, 1988.
2. Bachman, D., "Implementing Chinese Tax Policy," in D. Lampton, (ed.), *Policy Implementation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 California Press, 1987.
3. Chamberlain, H.B., "Party-Management Relations in Chinese Industries," *China Quarterly*, No. 112, 1987.
4. Delfs, R., "Jiangsu's Dynamic Rural Industry Comes under Attac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9. 9. 14.

21) 노동자 시위에 관한 보도는 Ignatius and Bennett(1989)에 언급되어 있다.

5. Ellman, M., "China's OTC Market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No. 1, 1988.
6. Fama, E., and M. Jenso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6, 1983, pp. 301-26.
7. Fang, R., and D. Fu (eds.), *Shehuizhuyi Guojia Soyoza Guanxi Gaigede Lirun Yu Shijian (Theory and Practice of Reforms of Ownership Relations in Socialism)*, Beijing: Peoples' Univ. Press, 1987.
8. Furuboton, E., and S. Pejovich,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0, 1972, pp. 1157-62.
9. Gao, S. (ed.), *Chengbao Qiyede Neibu Peitao Gaige (Accompanying Internal Reform of the Contracted Management System Enterprises)*, Beijing: Jingji Guanli Press, 1988.
10. He, C., "Yejin Qiye Neibu Jingjizerenzhi Zai Shenhua Gaige Zhong Buduan Wanshan He Fazhan (Metallurgical Enterprises' Internal Economic Responsibility System Has Been Incessantly Developed and Improved with Deepening Reforms)," in *Zhongguo Gangtie Gongye Nianjian*, PRC, Ministry of Metallurgical Industry. 1987.
11. He, T., "Summary of the Development of China's Shareholding Enterprise," *Zhongguo Jingji Tizhi Gaige*, No. 1, (translated in Joint Publishing Research Service, JPRS), # FBIS-CHI-89-031, 1989.
12. Hong, N., and R. Lansbury, "The Workers' Congress in Chinese Enterprises," in M. Warner (ed.), *Management Reforms in China*, London: Frances Pinter, 1987.
13. Ignatius, A., and A. Bennett, "China's Economic Woes Post Risk of New Unrest,"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89. 8. 7.
14. JIC (China Jialing Industrial Corporation), "Zhongguo Jialing Gongye Gefen Yoxian Gongci Changcheng (Constitution of the China Jialing Industrial Corporation)," *Jingji Guanli*, No. 1, 1988.
15. Jingji Ribao, "Chengbao Yao Jiangu Guojia He Qiye Liangtou Buneng Baoying Bubaokui (Contracts Should Take Care of Both State and Enterprises so as Not to "Contract Profits but Not Losses")," 1988. 3. 13.
16. Kornai, J.,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No. 1, 1986.
17. Korzec, M., "Efficiency Wages and Enterprise Behavior in China,"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No. 1, 1988.
18. Lee, K., "The Chinese Model of the Socialist Enterpris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89.
19. Lee, K., and Mark, S., "Socialist Egalitarianism and the Agency Problem in China's Economic Reform," *Seoul Journal of Economics*, 1989.

20. Marx, K.,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1891 in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21. Milgrom, P., "Employment Contracts, Influence Activities, and Efficient Organization Desig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 1, 1988.
22. Morris, R., "Trade Unions in Contemporary China,"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13, 1985.
23. Moore, J., Agency Costs, Technological Change, and Soviet Central Planning, No. 2, 1981.
24. Mou, Z. et al., "Wochang Shixing Qiye Gufenzhile Shizhan Yu Tihui (Practice and Experience of the Shareholding System in My Enterprise)," *Jingji Guanli*, No. 1, 1988.
25. PRC, Chinese Economic System Reforms Research Institute, "Chengbaozhe Keneng Chengwei Qidong Chengshi Huolide Zhongyao Qiji (Contract System Can Be an Important Momentum to Start Cities' Vitality)," *Jingji Ribao*, 1988. 2. 22.
26. PRC, Conference (on the China's Economic Reform), "Quanguo Jingji Tizhi Gaige Lirun Yantaohui Zongshu (Summary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ies of Economic System Reform)," *Zhongguo Jingji Tizhi Gaige*, No. 12, 1988.
27. PRC, Economic Committee, *Guranche Quanmin Soyozhi Gongye Qiye Sange Tiali Quanmian Tuixing Changzhang Fuzezhili (Carrying Out the Three Regulations on the State Industrial Enterprises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Manager Responsibility System)*, Beijing: Jingji Guanli Press, 1987.
28. PRC, Enterprise System Reform Research Team, *Chengbaozhi Zai Shijianzhong (Practices of the Contracted Management System)*, Beijing: Jingji Guanli Press, 1988.
29. PRC, State Council, *Zhongguo 1985 nian Gongye Pucha Ziliao (1985 Industry Census of China)*, Beijing: Tongji Chubanshi, 1987.
30. _____, "Quanmin Soyozhi Gongyeqiye Chengbao Jingying Zirenzhi Zhanxing Tiaoli (Provisional Regulation on the CMS in State Industrial Enterprises, 1988. 2. 27)," *Zhongguo Jingji Tizhi Gaige*, No. 4, 1988.
31. Pryor, F.L.,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Communist and Capitalist Nations*, Indiana Univ. Press, 1973.
32. Rosario, L., "Borrowing Boo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9. 9. 14.
33. Sha, T. (ed.), *Zenyang Shixing Changzhang Fuzezhili (How to Implement the MRS)*, Beijing: Jingji Ribao Chubanshi, 1988.
34. Shanghai Wenhuibao, *Tantao Qiye Chengbaozhi Changduan Libi (Discus-*

- sions about Long and Short Sides of the Contract System), 1988. 8. 16.
- 35. Tirole, J., "Hierarchies and Bureaucracies: On the Role of Collusion in Organization," *Journal of Law, Economy and Organization*, No. 2, 1986.
 - 36. Walder, A., "Wage Reform and the Web of Factory Interests," *China Quarterly*, No. 109, 1987.
 - 37. Wang, B., "Guanyu 1987 nian Guojia Yusuan Zhixing Qingquang He 1988 nian Guojia Yusuan Chuande Baogao (Report about 1987 State Budget Execution State and 1988 State Budget Draft)," *Renmin Ribao*, 1988. 4. 17.
 - 38. Wang, K., *Zhongguo Qiye Xinmoshi Chutan (A Study on New Models for Chinese Enterprises)*, Wuhan: Wuhan University Press, 1987.
 - 39. White, G.,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Chinese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ntract System," *China Quarterly*, No. 3, 1987.
 - 40. Williamson, O.E., "Enterprise Reform in China: A Transaction Cost Economics Perspective," *mimeo*, 1988.
 - 41. _____, "Operationalizing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e Transaction Cost Economics Perspective," *mimeo*, 1989.
 - 42. Wong, C., "The Economics of Shortage and Problems of Reform in Chinese Industry," *Journal Comparative Economics*, 1986, pp. 363-87.
 - 43. Wu, Fu., and W. Cheng, "While Letting the 'Tiger' Return to the Hill, We must Prevent It from Hurting People: The Effects of the Shareholding System on Inflation," *Jingji Cankao*, translated in JPRS, # FBIS-CHI-89-031, 1989. 2. 16.
 - 44. Wu, S., "Dui Guoying Dazhongxing Qiye Gufenhua De Wojian (My Opinion on the Transformation of Large-medium Sized State Enterprises into Shareholding Systems)," *Zhongguo Jingji Tizhi Gaige*, No. 4, 1987.
 - 45. Zhao, L., "A Discussion of Our Country's Experiment on the Shareholding System," *Renmin Ribao*, translated in FBIS-CHI-89-071, 1989. 4. 13.